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2. . . (제 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 전산설비 등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의 설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기능을 확대하고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대구센터 추진단의 기능 확대

대구센터의 전산환경 구축,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의 대구센터로의 이전·운영, 대구센터의 건축·설비의 운영 등 대구센터 설치 실행단계에서 대구센터 추진단이 수행할 기능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나. 대구센터 추진단의 유효기간 연장

대구센터의 안정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대구센터 추진단의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전자정부법 제54조(정보자원 통합관리)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추후 예정
 3) 규제심사 추후 예정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구센터 청사 및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대구센터 전산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
6.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의 대구센터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으로 이전·전환에 관한 사항
7. 대구센터로 이전·전환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관한 사항

대통령령 제27169호 부칙 제2조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기능)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기능)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정보시스템 및 설비의 대구센터 이전 지원에 관한 사항</u>	4. <u>대구센터 청사 및 시설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u>
5. <u>대구센터로 이전되는 정보시스템 및 설비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u>	5. <u>대구센터 전산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u>
<신설>	6. <u>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시스템의 대구센터 클라우드컴퓨팅 환경으로 이전·전환에 관한 사항</u>
<신설>	7. <u>대구센터로 이전·전환된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관한 사항</u>
6. (생략)	8. (현행 제6호와 같음)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영은 <u>2022년 12월 31일까지</u> 효력을 가진다.	부칙 제2조(유효기간) ----- <u>2023년 12월 31일</u> -----.

〈 의안 소관 부서명 〉

총괄기획과	
연 락 처	(042) 250 - 5048